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협회 공동 성명서

심리서비스법 입법 반대 공동성명서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협회는 2003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승인(제292호)을 받은 후, 2010년 3월 여성가족부로 소관부처가 이관되었습니다. 본 협회는 설립목적에 맞추어 지금까지 묵묵히 흔들리는 가정을 일으켜 세움으로써 건강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한 길만을 걸어 왔습니다. 한국에서 가족상담이라는 용어가 아주 생소할 때부터 가족관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한 사명으로 알고, “가정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부부가 웃어야 자녀가 산다” 등, 건강가정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앞장서 펼쳐왔으며, 가족상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족상담사 양성 및 자격관리, 재연수 사업 및 전국에 가족상담센터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가족상담의 국민적 인식 확산과 지역사회 서비스 전달을 위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의 업무협약을 맺어, 교육 및 자격관리를 지원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본 협회는 정관에 명시된 설립 목적을 구현하기 위해서, 국민을 위한 가족상담과 부부상담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표된 심리서비스법안은, 상담관련 학회와 협회, 상담전공 대학원 등 상담관련 단체들에게 크나 큰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발의된 심리서비스법은 아주 극히 제한된 조건에만 충족하는, 매우 특정한 일부 대상자들(심리학 전공)만이 국민들에게 심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들만이 오

직 심리서비스 면허를 취득하고 운영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으므로, 이 법안은 지극히 비현실적임과 동시에 매우 배타적인 세부 조항까지 포함하고 있어서, 상담분야에서 종사하는 모든 상담사들에 대한 명백한 권익 훼손과 더불어 국민들을 위한 상담서비스 체계에 매우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 너무나 자명하기에, 금번에 발의된 이 심리서비스법안에 본 협회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본 협회는 금번에 발의된 이 심리서비스 법률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근거로 강력히 반대합니다.

첫째, 심리서비스 법률(안) 제1조의 목적에 문제를 제기합니다.

본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정관 제1조(목적)에 의하면, 본 협회는 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는 이들에게 상담의 기회를 부여하여 가족 관계의 회복과 건전가정을 도모케 하며, 이 일에 종사하는 상담사를 양성함으로써 가정의 행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본 협회 설립목적에는 상담서비스의 대상(가족관계에 문제가 있는 이들)과 내용(상담의 기회 부여), 목적(가족 관계의 회복과 건강가정 도모), 시행방법(상담사 양성)이 아주 분명하게 잘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심리서비스 법률(안) 제1조(목적)에 의하면, 이 법안의 목적이 심리서비스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고, 모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사회적 건강 및 행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 즉, 발의된 심리서비스법률(안)의 목적에는 심리서비스의 대상이 분명하게 제

시하지 않았으나, 제2조(정의)에서는 심리서비스를 정의하기를,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심리학적 행위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심리서비스의 대상은 불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심리서비스의 내용은 개인적인 패러다임에 의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끔 명시한 것은 이 법률안의 크나 큰 허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담은 개인의 심리내적 역동도 중요하지만, 가족관계와 부부관계에서 관계적 역동을 다룰 수 있는 관계전문가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심리서비스 내용에 가족관계나 부부관계를 다룰 수 있는 관계상담의 전문성이 전혀 고려돼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안의 이러한 불명확한 허점이, 현재 상담현장에서 활동하는 상담사들의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와, 심리상담 및 치료, 심리상담 교육 및 자문 등의 고유 영역의 전문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며, 국민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제공되어온 상담사들에 의해서 제공된 상담관련 제반 서비스를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시킴으로써, 국민들의 정신적, 가족관계적인 삶의 질을 도리어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둘째, 심리서비스법률(안) 제2조(정의)에서 제시한 “심리사”에 대한 정의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합니다. 법률안에 따르면, “심리사란 심리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면허를 취득하지 않는 사람이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며, 국가가 직접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능력을 검증한 후 해당 행위를 허가합니다. 즉, 심리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심리서비스법률안 제2조(정의)에 명시된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심리상담/심리치료, 심리재활, 심리교육, 심리자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심리학적 행위를 일체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심리서비스 법률안이 심리서비스의 대상이 누구인지는 확실히 명시도 하지 않은 채, 방만한 심리상담서비스들을 모두 다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면허로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이 심리서비스법에 의하면, 현재 각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심리검사 및 심리평가 전문가, 심리상담 및 치료 전문가, 가족상담전문가, 부부상담전문가, 심리상담 교육 전문가, 심리재활전문가 등)을 불법 심리서비스 행위자로 규정하게 되는 것이며, 그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지게 만드는 악법이 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셋째, 심리서비스법률(안) 제7조(심리사 면허)에서 명시된 심리사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다음 세부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1. 심리학을 전공하여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실무수련을 이수한 사람.

실무수련 기간 및 기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심리학을 전공하여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실무수련을 이수한 사람.

실무수련기간 및 기타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의 대학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여 졸업하고 외국의 심리사 면허를 가진 사람

한국의 심리학 전공 대학교(학사)와 대학원(석·박사)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과학적 방법론을 사용하여 연구하는 교과목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심리학 전공 대학교(학사 교육과정) | 심리학 전공 대학원(석·박사 교육과정) |
|---------------------|-----------------------|
| 심리통계학(전공필수) | 고급심리통계 |
| 실험 및 심리입문 및 실험 | 정신병리학 |
| 발달심리학 | 고급발달심리학 |
| 심리측정과 검사 | 심리평가 |
| 조직심리학 | 고급조직심리학 |
| 정서심리학 | 고급정서심리학 |
| 임상심리학 및 실습 | 임상 및 상담현장실습 |
| 성격, 이상 심리학 | 집단상담, 치료 |

반면에, 한국의 상담관련 전공 대학교(학사)와 대학원(석·박사) 교육과정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부모·노인 등 각 대상에 따른 심리학은 물론 정신병리와 심리검사, 각종 상담 기법과 심리치료 이론들을 바탕으로, 상담실습 훈련을 통해서 각 분야의 상담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상담관련 전공 대학교(학사 교육과정) | 상담관련 전공 대학원(석·박사 교육과정) |
|----------------------|------------------------|
| 가족관계, 가족상담, 부부상담 | 가족부부상담 |
|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부모자녀관계와 부모교육 |
| 아동청소년상담, 놀이치료 | 가족이론, 가족관계, 가족치료이론 |
| 집단상담 | 상담사례실습 및 수퍼비전 |
| 상담이론 및 실제 | 집단상담 |
| 위기개입과 상담 | 재활심리학 |
| 심리검사 | 고급 심리치료 및 상담이론 |
| 상담현장실습 | 예술치료 |

결론적으로, 심리학과 상담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상호보완적인 융합적 학문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심리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자격 요건을 심리학 학위 취득자만으로 규정을 하는 것은, 상담학 관련 전공자들을 배제하자는 불의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의 마음과 행동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기초·응용학문과 실천학문의 바탕으로 한, 상담학의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상담효과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비과학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COVID19로 인해서 가족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에서 가족관계나 부부관계를 다룰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가족상담전문가, 부부상담전문가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심리사로 한정된 이 자격 요건은 이 심리서비스법(안)의 제1조의 목적에 명시되어 있는, 심리서비스의 전문성을 현저히 낮출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정신적인 삶의 질의 향상과 심리사회적 건강 및 행복, 관계증진에 기여함을 도리어 저해하는 조항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비영리 사단법인 한국가족상담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다음 사항을 강력하게 요청하고자 합니다.

하나, (사)한국가족상담협회는 심리서비스법안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7조(심리사 면허) 조항 등에 잘못된 문제를 분명하게 제기하며, 이 심리서비스법안의 입법처리를 즉시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하나, 보건복지부는 심리상담 분야 전문가 양성과 교육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단체들과, 학교들, 상담심리 관련 기관들과 아주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현장실사를 거친 후에, 국민들께서 스스로 선택하실 수 있도록,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국민-중심의 양질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국가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제대로 실효성이 있는 입법마련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하나, (사)한국가족상담협회는 상담심리 관련 전국 단체, 학교, 학회,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이번 심리서비스법안 발의 반대운동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 심리서비스법 반대 성명서에 협회 회원님들께서 한 마음으로 동의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해당 명단을 5월 초에 취합하고 공동 성명서를 확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1년 5월 1일

(사)한국가족상담협회 심리서비스법(안) 입법반대 비상대책위원회